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4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의원발의】
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9.

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9. .

도시환경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강한곤 의원 등 6명(김정희, 정순옥, 고명욱, 김장관, 장호섭)
- 발의일자: 2025. 9. 3.
- 회부일자: 2025. 9. 3.
- 검토기간: 2025. 9. 4. ~ 9. 10.

2. 제안이유

-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을 정비하여 편의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함 (안 제3조제3항제4호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개정 조례안: 붙임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5. 9. 3. ~ 9. 15.)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와 유모차 동반 주민이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9조제3항에서 규정한 어린이의 이용 편의 보장 취지와 부합되며 어린이 및 보호자의 공원 이용 안전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휴식 공간 확보와 아동·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
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또는 유모차를 동반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보행자길 등 관련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한다.</u></p>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~ 다. (생략)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(생략)

3. ~ 7. (생략)

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9조(공원시설의 설치·관리기준) ① ~ ② (생략)

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·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